

## 2026 신기훈 행정 GS2 모의고사(8) 채점평

### 1. 문제 개관

이번 8회 모의고사는 공무원의 연가보상비 청구권의 법적 성질(구체적 청구권 vs. 추상적 청구권)을 중심으로, 적절한 소송형태의 선택 및 피고적격 문제([물음1])와 관련청구병합의 적법요건 및 소변경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물음2])을 출제하였습니다. 본 문제는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9두48905 판결을 기반으로 한 창작 사례로서, 단순한 개념 암기를 넘어 급부청구권의 발생 구조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사안에 포섭하는 능력이 요구됩니다. 특히 [물음1]에서는 연가보상비청구권이 '구체적 청구권'에 해당함을 논증한 후 이에 부합하는 소송형태를 도출하는 것이 핵심이며, [물음2]에서는 주된 취소소송의 부적법을 확인한 후 관련청구병합의 각 하 결론과 소변경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논증 구조를 갖추는 것이 핵심입니다.

### 2. [물음1] 채점평 - A가 제기하여야 할 소송의 형태 및 피고 (25점)

#### 가. 문제의 핵심 구조

이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논증 구조를 정확히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①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②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기준(추상적 청구권 vs. 구체적 청구권) → ③ 사안에의 적용(연가보상비청구권의 법적 성질 - 구체적 청구권 해당 여부) → ④ 피고적격 → ⑤ 결론  
각 단계의 논리적 연결이 끊기거나 사안 포섭이 부실한 경우 감점 요인이 됩니다.

#### 나. 각 논점별 세부 채점 기준

##### 1)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3점)

당사자소송은 공법상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사법관계를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분되고, 당사자소송은 행정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므로 관할 확정을 위해 양자의 구별이 필요함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구별 기준에 관하여 소송물 기준설(판례)과 법률관계 기준설(통설)의 대립을 간략히 언급하면 충실한 답안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은 사안의 핵심 쟁점인 '구체적 청구권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은 논점입니다. 사안에서 연가보상비에 관한 법률관계가 공법상 법률관계에 해당함은 비교적 명백하므로,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대립을 지나치게 장황하게 서술하는 것은 사실상 무익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이 부분에 과도한 분량을 할애한 답안은 핵심 논점인 구체적 청구권 여부 및 항고소송·당사자소송의 구별에 관한 서술이 상대적으로 부실해지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답안 작성 시 분량 배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 2)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 추상적 청구권 vs. 구체적 청구권 (8점)

이 부분이 [물음1]의 핵심 배점 구간입니다.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구별하여 서술하지 못한 답안은 대폭 감점됩니다. 먼저 추상적 청구권(항고소송)의 경우, 판례는 "행정청의 인용결정으로 비로소 구체적 청구권이 발생하므로 법령이 규정한 요건에 해당하여 급부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이더라도 행정청의 인용결정 없이 곧바로 급부 청구는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체적 청구권(당사자소송)의 경우, 판례는 "어떤 공법상의 급부청구권이 근거 법령상 행정청의 1차적 판단 없이 곧바로 구체적으로 발생한다고 해석된다면, 당사자의 그 지급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 의사표시에 대한 항고소송이 아닌 당사자소송으로 이행을 구하여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음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두 유형의 구별기준을 명확히 서술하지 않고 결론만 서술한 답안은 감점됩니다.

cf. 형식적 당사자소송의 논의는 추상적 청구권에서의 쟁점인 만큼, 간단한 언급을 넘어서는 서술은 무익적 기재에 해당합니다.

### 3) 사안에의 적용 - 연가보상비청구권의 법적 성질 (10점)

이 부분 역시 [물음1]의 핵심 배점 구간으로서, 사안 포섭의 정밀도에서 답안 간 차이가 크게 납니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에 비추어 보면, 공무원의 연가보상비청구권은 공무원이 연가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등 법령상 정해진 요건이 충족되면 그 자체만으로 지급기준일 또는 보수지급기관의 장이 정한 지급일에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고, 행정청 B의 지급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 아님을 논증하여야 합니다.

나아가 B의 결정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취소소송을 제기하도록 규정한 조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보충적 근거로 서술하면 충실한 답안이 됩니다. 따라서 B의 연가보상비 부지급 행위는 A의 법률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고, 연가보상비 지급청구권은 행정청의 1차적 판단 없이 직접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으로서 행소법 제3조 제2호 및 행정소송규칙 제19조 제2호에 따른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함을 결론으로 도출하여야 합니다.

### 4) 피고적격 (3점)

당사자소송에서는 처분등의 효력 자체가 아닌 그로 인한 법률관계 자체가 소송의 대상이 되고, 처분등을 행한 행정청이 아닌 그 법률관계의 권리주체인 한쪽 당사자를 피고로 한다는 점(행소법 제39조)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는 당해 법률관계의 권리·의무 귀속주체인 '대한민국'을 피고로 하여야 함을 명확히 서술하여야 합니다.

#### [물음1] 총평

이번 시험에서 다수의 답안이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대립을 지나치게 상세히 서술하는 데 분량을 소진한 나머지, 정작 핵심 쟁점인 연가보상비청구권의 법적 성질(구체적 청구권 해당 여부)에 관한 논증이 부실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물음1]의 핵심은 연가보상비청구권이 '구체적 청구권'에 해당하여 당사자소송으로 다루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서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기준에 관한 학설 대립은 공법상 법률관계임이 비교적 명백한 이상 사실상 무익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이 부분에 과도한 분량을 할애하지 말고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기준 및 사안 포섭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물음1]의 논증 구조는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간략히) →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기준(추상적 청구권 vs. 구체적 청구권) → 사안 포섭(국가공무원 복무규정 §16⑤ 분석 → 연가보상비청구권 = 구체적 청구권 → B의 부지급 행위 = 처분 아님) → 당사자소송 결론 → 피고적격(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플로우가 있어야 합니다.

### 3. [물음2] 채점평 - 수소법원의 판단 (25점)

#### 가. 문제의 핵심 구조

이 문제의 핵심은 다음과 같은 논증 구조를 정확히 구성하는 데 있습니다.

① 관련청구병합의 의의 및 요건 → ② 주된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검토(처분성 부정) → ③ 관련청구병합 각하 결론 → ④ 소변경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석명권 행사) → ⑤ 결론

특히 ③과 ④의 논리적 연결이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관련청구병합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서 멈추지 않고, 원고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소변경에 관한 석명권 행사 필요성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유기적 논증 구조를 갖추어야 합니다.

#### 나. 각 논점별 세부 채점 기준

##### 1) 관련청구병합의 의의 및 요건 (6점)

행소법상 관련청구소송의 병합은 취소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에 당해 소송에 관련 있는 청구소송인 관련청구소송을 병합하여 제기하는 것으로서, 소송경제 및 관련사건 판결의 모순·저촉 방지를 위한 제도임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요건으로는 ① 주된 청구인 취소소송 등에 관련청구를 병합할 것(행소법 §10②), ② 관련청구소송이 병합될 것(내용 또는 발생의 원인이 처분등과 법률상·사실상 공통되거나 처분의 효력이나 존부 유무가 선결문제로 되는 관계), ③ 각 청구소송이 적법할 것, ④ 후발적 병합의 경우 주된 취소소송이 사실심변론종결 전일 것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사안에서 (1)(2)(4) 요건과 관련하여 문제되는 사정은 없으나, (3) 요건과 관련하여 주된 청구소송인 취소소송이 처분성을 흠결하여 대상적격이 부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임을 명확히 지적하여야 합니다.

##### 2) 연가보상비 지급거부에 대한 취소소송의 적법성 (8점)

이 부분이 [물음2]의 첫 번째 핵심 배점 구간입니다.

[물음1]에서의 논증과 일관되게, 연가보상비청구권은 법령상 요건의 충족만으로 구체적으로 발생하는 '구체적 청구권'이므로 B의 반려는 단순한 법률적 견해 표명에 불과한 '관념의 통지'에 해당하여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음을 논증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A가 제기한 B의 반려에 대한 취소소송은 대상적격을 결여하여 부적법 각하의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A의 당사자소송 병합청구 역시 주된 청구소송이 부적법하므로 각하결정의 대상이 됨을 명확히 서술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물음1]의 논증과 논리적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처분성 부정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서술하지 않은 답안은 감점됩니다.

##### 3) 법원의 석명권 행사와 소송류의 변경 (8점)

이 부분이 [물음2]의 두 번째 핵심 배점 구간이자, 이번 시험에서 가장 많은 수험생이 논증의 유기적 연결에 실패한 논점입니다. 먼저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합니다. A의 병합청구신청이 각하되어 신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 신소 청구의 제척기간이 도과된 상황이라면 A는 더 이상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할 수 있는바, 수소법원이 석명권을 행사하여 병합신청을 행소법 제21조의 소변경의 취지로 선해한다면 A는 구소인 취소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되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다음으로 판

례의 입장을 정확히 서술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취소소송 등을 제기한 자가 당사자소송을 관련 청구로서 병합한 경우 위 취소소송 등이 부적법하다면 당사자는 당사자소송의 병합청구로서 취소소송에서 당사자소송으로 소변경을 할 의사를 아울러 가지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법원은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는 한 병합청구 당시 유효한 소변경청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허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검토로서, 석명권은 소송수행 기술의 부족으로 주장할 사항을 불완전하게 주장하는 경우 법원이 후견적 지위에서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소송지휘권으로서 국민의 재판청구권(헌법 제27조 제1항)에 대한 실효적 보장을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판례의 입장이 타당함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소변경의 효과로서, 행소법 제21조 제4항, 제14조 제4항에 따라 처음부터 당사자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의 취소소송이 적법한 기간 내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사자소송의 제소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함을 서술하여야 합니다.

#### 4) 결론 (3점)

A의 관련청구병합신청은 주된 청구소송인 취소소송이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므로 원칙적으로 각하결정의 대상이나, 수소법원은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여 연가보상비의 지급을 구하는 당사자소송으로의 소변경 의사를 끌어내 소변경을 허가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명확히 서술하여야 합니다.

#### 다. [물음2] 총평

이번 시험에서 다수의 답안이 관련청구병합의 요건 및 취소소송의 처분성 부정까지는 비교적 잘 서술하였으나, 관련청구병합 각하 결론과 소변경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 사이의 유기적 논증 연결에 실패한 한계를 보였습니다. 특히 관련청구병합이 각하되어야 한다는 결론에서 논증을 종료하거나, 소변경 부분을 단순히 부가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친 답안이 다수였습니다.

[물음2]의 핵심은 관련청구병합 각하 → 원고의 권리구제 공백 발생 → 석명권 행사를 통한 소변경 허가라는 논증 흐름이 하나의 유기적 구조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관련청구병합 각하 결론이 원고에게 초래하는 실질적 불이익(제척기간 도과 시 권리구제 불가)을 명확히 제시한 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석명권 행사와 소변경 허가의 필요성을 논증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물음2]의 논증 구조는 "관련청구병합의 의의 및 요건 → 사안 포섭((3) 요건 검토 필요) → 취소소송의 처분성 부정(연가보상비청구권 = 구체적 청구권 → B의 반력 = 관념의 통지) → 관련청구병합 각하 결론 → 문제점(제척기간 도과 시 권리구제 공백) → 판례(소변경 의사 의제 + 석명권 행사) → 검토(재판청구권 실효적 보장) → 소변경의 효과(행소법 §21④, §14④) → 결론(석명권 행사하여 소변경 허가)"으로 이어지는 플로어가 있어야 합니다.

#### 4. 종합 총평

이번 8회 모의고사는 공법상 급부청구권의 발생 구조에 관한 판례 법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를 소송형태의 선택 및 소변경을 통한 권리구제 문제에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문제였습니다. 전반적으로 기본 개념 서술은 비교적 양호하였으나, 핵심 쟁점에 대한 분량 배분과 논증의 유기적 연결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특히 이번 시험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물음1]에서 민사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에 관한 학설 대립은 이 사안에서 사실상 무익적 기재사항에 해당하므로 간략히 서술하고, 핵심 쟁점인 항고소송과 당사자소송의 구별 기준(추상적 청구권 vs. 구체적 청구권) 및 연가보상비청구권의 법적 성질 분석에 집중하여야 합니다. 구체적 청구권 해당 여부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6조 제5항에 근거하여 정밀하게 논증하지 못한 답안은 감점됩니다.

둘째, [물음2]에서 관련청구병합 각하 결론과 소변경을 통한 권리구제 가능성이 하나의 유기적 논증 구조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관련청구병합 각하에서 논증을 종료하거나, 소변경 부분을 단순히 부가적으로 언급하는 데 그친 답안은 이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원고의 권리구제 공백이라는 문제점을 명확히 제시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석명권 행사와 소변경 허가의 필요성을 판례에 근거하여 논증하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고득점 답안은 [물음1]과 [물음2]의 논증이 연가보상비청구권의 '구체적 청구권' 해당 여부라는 하나의 핵심 법리를 중심으로 일관되게 연결되어 있으며, 각 논점에서 판례의 기준을 사실관계에 정확히 포섭한 답안입니다.

**어렵고 고된 2순환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